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 및 정년 연장 근거 마련 >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1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 및 정년 연장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2025. 4. 10.
3. 회부연월일: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총장, 교수, 부교수 등)의 정년은 65세임. 또한, 우수 교육공무원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 승진,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47조)

Ⅲ. 검토의견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 및 정년 연장 근거 마련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생략) <u><신설></u>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u>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이하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요건, 승진 가산점 기준 등에-----.</u>
제47조(정년) ① (생략)	제47조(정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최근 5년간(2020~2024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8천여명, 0.03명 증가하였으나, 출생아 수 23만 8천여명,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저조한 수준임.

[표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20~2024년)

(단위: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²⁾
출생아 수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43
합계출산율 ¹⁾	0.84	0.81	0.78	0.72	0.75

주: 1)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2024년도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각 연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출산, 보육 등의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¹⁾ 등에 따른 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음.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24년 12월,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인사관리상 우대하는 정책 대상에 다자녀양육자를 추가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바 있음.²⁾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개정안은 다자녀(자녀 2명 이상)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및 정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어³⁾ 해당법을 적용받지만,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2)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0627호, 2024.12.31. 개정, 2024.12.31. 시행)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0621호, 2024.12.31. 개정, 2024.12.31. 시행)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특례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⁴⁾ 개정안의 내용은 임용(승진)과 신분보장(정년)에 해당하므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른 법령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① 먼저, 개정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승진 가산점**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는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 이를 위해 순위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⁵⁾

승진후보자 명부는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의 평정점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 명부로,⁶⁾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4)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명부의 작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

명부에 포함되는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되는데,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 교원 근무경력,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경력, 직무연수 이수실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고, 선택가산점은 도서벽지 교육기관 근무 경력, 농어촌 학교 근무 경력, 기타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가 해당됨.

[표 2] 현행법령상 가산점

구분	내용	점수
공통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월 0.018점(1개월 미만: 일 0.0006점) • 가산점 총합계는 1점 이내
	•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	• 월 0.015점(1개월 미만: 일 0.0005점) • 가산점 총합계는 0.5점 이내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 중 동 규정 제8조의2 ¹⁾ 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	• 1학점당 0.02점 •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 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음
	•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 ²⁾ 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 가산점 총합계는 1점 이내
선택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가산점 총합계는 10점 이내
	•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주: 1)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

2)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항

자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 및 제5항 정리

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현행법상 가산점은 연구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도서벽지 교육기관, 농어촌 학교 등에서의 근무, 직무연수 이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인정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근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동기 부여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의 가산점이 교육활동 경력 또는 실적에 따라 부여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의 가산점은 자녀의 수에 따라 부여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교육공무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적용하는 경우에도 현행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점을 고려하여 한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가점평정과 관련하여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② 다음으로, 개정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 승진임용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행법은 승진을 규정하고 있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서 특정한 경우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구체적으로 특별 승진임용은, 포상 수상, 교육발전 공헌 실적, 창안 등급 동상 이상 수상의 경우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고, 명예퇴직,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 없이 특별 승진임용이 가능함.

[표 3] 현행법령상 특별 승진임용

내용	비고
-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수상한 사람 - 교수·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적을 인정하고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	상위 자격증 취득 또는 자격기준 충족
-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경우 -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교육부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자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중 해당 조항 정리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보다 승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동기 부여에 기여하는 바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의 특별 승진임용이 교육에 대한 공로 또는 재직경력의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개정안의 특별 승진임용은 자녀의 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으며 교육에 대한 공로로 이루어지는 특별 승진임용에서 갖추어야 할 상위 자격증 또는 자격기준에 대한 요건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다자녀 양육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승진임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공무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시점, 횟수 등의 기준과 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③ 또한, 개정안 제47조제2항의 정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⁸⁾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임.⁹⁾

8)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한편,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의 수에 따라 1~3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경제활동 기간이 연장되므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정년은 교육공무원의 교육활동, 업무 등에 대한 고려없이 자녀의 수만을 기준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년 연장에 대해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생, 학부모 등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년을 조정하는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¹⁰⁾ 교육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한 입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9)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모두 65세였으나, 1999.1.29. 법 개정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이외의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단축됨(법률 제5717호, 1999.1.29. 개정, 1999.1.29. 시행)
해당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은 그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과정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경우 그 최초임용시의 연령이 초·중등교원 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데다,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업무의 성격상 초·중등교원보다 높은 연령까지 대학교원으로 재직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입법자가 대학교원의 정년을 초·중등교원의 정년보다 3년 높은 65세로 책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 바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헌법재판소, 99헌마112, 2000.12.14.) 참고)

10)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헌법재판소, 99헌마112, 2000.12.14.) 참고

④ 아울러, 2023년 기준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은 약 10만 9천여명으로 응답 인원의 47.5%를 차지하는데, 개정안은 자녀 양육과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인원 모두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표 4] 교육공무원 자녀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자녀 수별 공무원 수						합계
		1인	2인 이상				소계	
			2인	3인	4인	5인 이상		
인원 수	229,615	40,786	94,985	13,166	789	115	109,055	149,841
비율	(100.0)	(17.8)	(41.4)	(5.7)	(0.3)	(0.1)	(47.5)	(65.3)

주: 응답 대상 인원 353,824명 중 응답 인원 229,615명에 대한 자료임
 자료: 인사혁신처, 「2023년 제12차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 2024.4.

그러나 개정안이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인 점,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교육공무원, 불임·난임 교육공무원에 비하여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적용례 등을 통해 개정안의 적용 시점과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승진, 정년 등에 대한 공무원의 형평성과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상당 부분을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9개 개정안의 심사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5]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 및 정년 연장 관련 법률 개정안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2209706호)	김상훈 의원	2025.4.10./ 2025.4.11.	행정안전 위원회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임용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 부여 (안 제40조의4제1항제6호 신설 및 제74조제1항)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209707호)	김상훈 의원	2025.4.10./ 2025.4.11.	국회운영 위원회	-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 연장 -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의 승진 우대 조치 시행 (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의2 신설 등)
3	지방공무원법 (제2209708호)	김상훈 의원	2025.4.10./ 2025.4.11.	행정안전 위원회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게 함 (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및 제66조제1항)
4	외무공무원법 (제2209709호)	김상훈 의원	2025.4.10./ 2025.4.11.	외교통일 위원회	-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 연장 -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게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5	경찰공무원법 (제2209710호)	김상훈 의원	2025.4.10./ 2025.4.11.	행정안전 위원회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6	소방공무원법 (제2209711호)	김상훈 의원	2025.4.10./ 2025.4.11.	행정안전 위원회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 (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7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209712호)	김상훈 의원	2025.4.10./ 2025.4.11.	정보 위원회	-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 연장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 부여 (안 제10조의2 신설 등)
8	군무원인사법 (제2209714호)	김상훈 의원	2025.4.10./ 2025.4.11.	국방 위원회	-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 연장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 부여 (안 제15조 및 제31조)
9	군인사법 (제2209716호)	김상훈 의원	2025.4.10./ 2025.4.11.	국방 위원회	-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 연장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 부여 (안 제8조 및 제30조 등)

주: 의안번호 순으로 정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승진 가산점 부여 또는 특별 승진임용
○ 교육부: 신중검토 - 양육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하는 방식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임용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다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관내 18개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신중검토 - 출산과 양육이 승진 대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도구가 될 수 없는바, 역량과 성과에 따라 승진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 - 또한, 미혼, 난임, 입양, 비혼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진 교원에 대한 역차별로 교원 사기 저하, 공직사회 공정성 저해, 승진 체계 혼란 등 교직 전반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세종교사노동조합: 신중검토 - 교육공무원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사유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에 출산크레딧(국민연금에 도입)을 도입하거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도로 자녀 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신중검토 -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또는 특별 승진임용은 교원의 승진 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개인의 권리와 사적인 상황을 지나치게 반영한 불공평한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 - 출산 장려 정책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포괄적인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안 제47조제2항) 정년 연장
○ 교육부: 신중검토 - 양육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정년 연장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자녀가 없거나 적은 교육공무원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어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관내 18개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신중검토 - 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최대치를 규정한 것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육아 시기와 노후 여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정년 연장이 육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에 부합한 해결책인지도 고민이 필요함.

- 또한, 미혼, 난임, 입양, 비혼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진 교원에 대한 역차별로 교원 사기저하, 조직 내 갈등 유발 등 교직 전반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공무원 연금, 공무원 수급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광주광역시(관내 1개 기관): 이견없음 -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퇴직(정년)으로 인한 소득 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에서부터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우선 적용하여 사회 전체에 확대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
○ 세종교사노동조합: 이견없음 -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자녀를 가진 교육공무원의 실질적 근무 기간이 짧아지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임.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신중검토 - 정년 연장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녀 수에 따른 정년 연장은 공무원 임용, 승진, 정년 등에 관한 법적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추후 공무원 수급에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전반적인 교육공무원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